

의안번호	제684호
의결 연월일	2024년 9월 11일 (제420회)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2일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2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8조의8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그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.
- 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여비 운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 신설(안 제6조)

3. 조례안(개정조례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”의장””을 “”충청북도의회의장”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)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라 부당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
2. 부정 수령한 금액,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
3.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

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,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영 제17조, 제22조, 제26조 및 제29조 중 "소속 장관"은 각각 "<u>의장</u>"으로 본다.</p> <p>3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"<u>충청북도의회 의장</u>"-----.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)</p> <p><u>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</u></p> <p><u>2. 부정수령한 금액,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</u></p> <p><u>3.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</u></p> <p><u>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</u></p> <p><u>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46조(실비보상 등)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,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